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1021호, '25.8.14. 공포, '26.2.15.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 지정 요건·절차 및 지정취소(시행령안 제5조의2 신설)

- 1) 現 공공형계절근로는 농·수협 계통조직에 한하여 운영중이나, 개정 법률은 지정제를 도입하면서 운영주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2) 담당인력, 사무공간 및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숙사를 운영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규정
- 3)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우리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 공모를 통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

나. 고용주의 임금채불 보증보험 가입(시행령안 제8조의2 신설)

- 1)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
- 2) 임금·물가가 상승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하도록 고시에 위임
- 3) 임금체불 시 계절근로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규정
- 4) 보증보험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시·군 등이 가입정보 수집 및 제공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다. 고용주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시행령안 제8조의3 신설)

- 1)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 다만 신규 입국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
- 2)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할 것을 규정
- 3) 외국인 계절근로자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라. 계절근로자의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시행령안 제8조의4 신설)

- 1)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 가입
- 2) 의료비 상승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장하도록 고시에 위임
- 3) 계절근로자가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고용주가
보험료 대납하고 임금에서 공제할 할 수 있도록 함
- 4) 계절근로자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 5) 상해보험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시·군 등이 가입 대상자 정보 수집

및 제공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시행령안 제13조 개정)

- 1)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시행령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2)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및 보험금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 고유식별정보 포함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 합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붙임(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지역조합·품목조합, 같은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사. 그 밖에 공공형 계절근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

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공공형 계절근로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공간, 전담인력 확보 및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숙사를 갖출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방법 등
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신속한 지정
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
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
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의2(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
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실제 근로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14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임금체불
에 대비한 보증보험(이하 “임금체불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야 한다.

1.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
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할 것

2.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보증보험회사

에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군·구의 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계약의 체결·변경·보험금 청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라 처리한 고유식별정보·그 외 보험계약 체결·변경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보험회사에 제공
2.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신고 지원 등

제8조의3(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계절근로자를 위하여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실제 근로 시작일. 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규입국자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14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으로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할 것
2. 외국인 계절근로자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제8조의4(상해보험의 가입)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이하 “상해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에 걸린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
2.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에 걸린 경우 및 상해·질병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

②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상해보험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령에 의한 공제로 본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군·구의 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상해보험 계약의 체결·변경·보험금 청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라 처리한 고유식별정보·그 외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보험회사에 제공
2. 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보험가입 기간 갱신, 단축 및 환급 등 상해보험 계약 변경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
3. 상해보험의 보험금 청구 대행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을 “해양수산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 및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군·구의 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군·구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계약 대행에 관한 사무

2.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4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변경·보험금 청구에 관한 행정적 지원 사무

③ 보험회사는 제8조의2, 제8조의3 또는 제8조의4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변경·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의2(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 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u> <u>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관일 것</u> <u>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에 따른 중앙회·지역조합 · 품목조합, 같은 법 제112 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 업법인 및 같은 법 제138 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u> <u>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 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 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 협동조합</u> <u>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 업</u> <u>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u>

조합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 기관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사. 그 밖에 공공형 계절근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공공형 계절근로를 운영하기
에 적합한 사무공간, 담당인력 확보 및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숙사를 갖추는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신 설>

한다. 이 경우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신속한 지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의2(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14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이하 “임금체불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할

<신 설>

것

2.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보
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의 보
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
치시장 또는 시·군·구의 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
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계약의
체결·변경·보험금 청구를 위
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라 처리한
고유식별정보, 그 외 보험계약
체결·변경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보험회사에 제공

2.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신고 지원 등

제8조의3(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
입)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
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계절근
로자를 위하여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다만, 외국인 계절근로
자가 신규입국자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

<신 설>

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14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으로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할 것

2. 외국인 계절근로자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제8조의4(상해보험의 가입)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이하 “상해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망하

거나 질병 등에 걸린 경우 농
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
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
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

2.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망하
거나 질병 등에 걸린 경우 및
상해·질병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

②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상해보험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임금에서 공
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기
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
른 법령에 의한 공제로 본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
치시장 또는 시·군·구의 장은
외국인계절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상해보험 계약의 체결·변
경·보험금 청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라 처리한
고유식별정보, 그 외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보험회사에 제공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2. 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보험가입 기간 갱신, 단축 및 환급 등 상해보험 계약 변경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

3. 상해보험의 보험금 청구 대행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해양수산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

-----.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

<신 설>

<신 설>

한 사무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군·구의 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군·구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계약 대행에 관한 사무
2.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4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변경·보험금 청구에 관한 행정적 지원 사무

③ 보험회사는 제8조의2, 제8조의3 또는 제8조의4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변경·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
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
리할 수 있다.